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78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임종성·강선우·양향자

고용진 • 안호영 • 김주영

김상희 · 김민기 · 임호선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 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및 복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와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연방 물법(Federal Water Act)을 통해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으로 생태적 균형과 더불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물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하천관리기능까지 포함한 통합 물관리체계가 출범할 예정인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

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천을 복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기반 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기후위기 피해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자연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전하며"를 "보전하며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로, "위하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로, "공공복 리"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제1조(목적)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 <u>보전하며</u> 하	<u>보전하며 기후</u>
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위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u>위하여</u> 하천의 지정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	<u>공존하는 방향으로</u>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u>공공복</u>	<u>지속가능한</u>
<u>리</u>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의
으로 한다.	